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2종(표준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2종(표준형),종합형](갱신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상품요약서 뒤에 있는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2종(표준형),종합형](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2종(표준형),종합형](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비 걱정없는 의료보험 : 아파도 다쳐도, 입원도 통원도, 사소한 감기부터 큰 병까지 병원비와 약값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MRI, 레이저치료,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도 빠짐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부담없는 보험료로 의료비 보상 : 1만 원대의 부담없는 보험료로 입원비 5,000만 원 한도, 통원비 30만 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무사고 갱신시 갱신보험료 혜택 : 갱신 직전 보험기간(1년) 동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의 95% 적용

- 세계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0세~65세	전기납	월납

주)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 : 15년

■ 재가입종료나이 : 종신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자동갱신절차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료 변경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계약자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종료

주) 갱신시 연령증가, 의료수가 인상, 예정기초율 변경 등으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비영업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시점에서 체신관서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 가능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체신관서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종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구좌)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sup>※</sup>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 통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1구좌)

구분	보상금액
외래	빙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 주2) <항목별 공제금액> 의원은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은 1.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입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li> <li>-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li> <li>-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li> </ul>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질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절의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청약서 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당 진단서	비고
사망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li> <li>■ 입원시는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등</li> <li>■ 통원시는 진료비계산서(통원일자별 의료비명기), 진료비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처방조제 영수증 등</li> </ul>
입원시	○	○	○	
통원시	○	○	○	
해약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li> </ul>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2종(표준형), 종합형(갱신형)]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20세	40세	60세	
무배당 입원의료비률	남자	0.000732	0.001237	0.004260	
	여자	0.000650	0.001515	0.004358	
무배당 통원의료비률	외래	남자	0.051586	0.084609	0.188446
		여자	0.072364	0.123859	0.255348
	처방조제	남자	0.032133	0.083194	0.364450
		여자	0.041869	0.085487	0.417260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2종(표준형), 종합형](갱신형)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만기 월납상품으로써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 보험용어 설명

- **보험약관** :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체신관서와 계약자간의 권리, 의무조항을 명시한 규정
- **보험계약자** :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나이** :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만 나이.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세로 계산
- **보험료** :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부가보험료로 구성
-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등)가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체신관서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장개시일** : 계약사항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